

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
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8. 4.

고용노동부장관

1. 최저임금액

업종 \ 결정단위	시간급
모든 산업	9,860원

◆ 월 환산액 2,060,740원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
-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: 2024. 1. 1. ~ 2024. 12. 31.